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김태훈 010-2684-1334)
제 목 [논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한다.
날 짜 2019. 7. 5.(총 2쪽)

[논 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한다.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고하였다. 주요내용은 국민연금기금 투자 대상 국내 상장회사(716개사, '18년말) 중, 기금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510개사, '18년말)에 대해 위탁사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향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접 보유분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위탁운용사의 주식 보유분만큼 의결권 행사 위임을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태도 기금운용의 철차적 정당성 담보 없이 의결권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이 사건 이후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스투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스투어드십 코드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위탁운용사들 거의 대부분이 소유 및 거래 관계 등으로 재벌대기업의 영향력 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태 합병 당시 증권사 중 반대의견을 낸 곳은 단 1곳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사실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을 하여야 하는 그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한다는 복지부의 취지는 사실상 주식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은 물론이며 국민으로부터 조성한 기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의결권 행사 위임의 여건도 불비하다. 기금운용본부 주주권행사팀 인력으로 위탁운용사가 수탁자 책임활동에 맞게 행사하였는지, 이해상충은 없는지 등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주주가 보유한 여러 의결권의 찬반을 다르게 행사하는 불통일행사시 회사의 거부권이 상법상 부여되어 있어, 주총 투표 전 회사가 불통일행사 추진여부를 번복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이러한 상황 아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행사 위임은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만일 의결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면 과연 과거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자본과 재벌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근원적인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구조적으로 자본과 재벌을 위한 의결권 행사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행사 위임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